

“청렴계약, 미래교육을 위한 깨끗한 약속”

전북특별자치도입실교육지원청 공고 제 2026-125호

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제정에 관한 사항

이 안내서는 전북특별자치도입실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소액수의 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견적제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 사유로 제재되어 3개월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이 공고서의 물량내역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 업역규제 폐지 미적용 안내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 1. 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 가. 공 사 명: 2026년 입실생태누리 조정시설 조성사업 공사
-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
- 다. 공사현장: 전북특별자치도 입실군 관촌면(입실생태누리)
- 라. 공사개요: 입실생태누리 조정시설 조성사업 공사 1식
-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공휴일 포함, 우천일수 미포함)

바. 공사예정금액

(단위 : 원)

기초금액 (A=B+C)	추정가액 (B)	부가가치세 (C)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D)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E=B+C+D)
133,176,000	121,069,091	12,106,909	0	133,176,000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60,824,000원

※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견적서접수 개시일시	견적서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8. 5.(수) 10:00	2026. 8. 7.(금) 10:00	2026. 8. 7.(금)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에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 재견적(입찰) 마감 일시는 2026. 8. 7.(금) 15:00, 개찰은 2026. 8. 7.(금) 16:00에 실시합니다.

3.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입니다.

다. 지역제한이며, 적격심사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청렴서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바.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사.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아.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자.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로,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마. 수의계약 상대방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합니다.

5. 현장설명: 생략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도서, 시방서 등의 열람이 필요하신 분은 견적서 제출기간 동안 임실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063-640-3517)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견적제출 방법

- 가.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의거 견적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나. 이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내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나.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1. 청렴서약제 준수사항

- 가.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련 법률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 시 첨부되는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 법정 정산과목 정산 준수

-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대상 공사로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합계 (A값)
874,009	661,486	86,919	1,904,328	0	0	423,204	3,949,946

-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 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라.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마.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 가. 본 계약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가. 전적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전적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전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 상대방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 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바.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계약서 포함)하여야 합니다.
-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가. 본 전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전적에 응하여야 하며,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붙임4]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을 숙지하여 [붙임5]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18. 기타 참고사항

- 【붙임1】**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업종(등록)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2026년 8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입실교육지원청 재무관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인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특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20)		20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반영 여부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여부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10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반영 여부	10	
B. 실행수준(40)		40	
③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기준	10	
④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⑤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⑥ 안전보건교육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C. 운영관리(20)		20	
⑦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⑧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⑨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소방서,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20)		20	
⑩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 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기관)명 :	3. 업체명 :	
	2. 작업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		(권장: 월별 1회 점검)	
-		-	
③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1. 작업명:	
①		①	
②		②	
2. 작업명:		2. 작업명:	
①		①	
②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 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